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877호
- 나. 발 의 자 : 이용균 의원(찬성자 13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4년 5월 27일
- 라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
2. 제안이유

-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함(안 제13조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‘대차대조표’ 라는 용어를 ‘재무상태표’로 변경함으로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발의됨.

나.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황

- 서울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)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동 조례를 근거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립됨.
- 서울시는 올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공급(총 2조 8천억원 규모)을 위해 228억원(신용보증 채원 122억원, 보증료 보전 106억원)을 출연하였으며, 5월말을 기준으로 1조 9,234억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였음.

< 2024년 신용보증 지원실적 >

(2024. 5월 말 기준, 단위: 건, 억원)

구분	보증공급		
	연간계획	실적	달성률
보증건수	98,000	65,788	67.1%
보증금액	28,000	19,234	68.7%

- 또한 동 재단은 고유사무인 보증지원 이외에도 서울시의 소상공인

지원 사업을 대행하여 소상공인의 생애주기(창업기-성장기-제도전기)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 종합지원을 제공하고 있음.

< 주요 대행사업 추진실적 >

(2024. 5월 말 기준)

사업명	세부사업	연간계획	추진실적
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금	합계	17,000억원	9,849억원
	중소기업육성기금	2,000억원	622억원
	시중은행협력자금	15,000억원	9,227억원
소상공인 종합지원	소상공인 교육	8,000명	4,525명
	컨설팅	4,000명	2,152건
	중장년 소상공인 지원	250개	(선발)125개
	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	1,300개	(접수)641개
	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 한 폐업 지원	3,000개	(선정)1,600개
지역 상권 육성	로컬 브랜드 상권 발굴 · 육성	4개	(선정) 4개
	신규 골목 상권 대상 상권 발굴 · 육성	7개	(선정) 6개
	골목 창업 청년 예비 창업 가 배출	24명	(교육) 20명

다. 용어의 정비

- 동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결산 서류 중 하나인 ‘대차대조표’ 를 ‘재무상태표’ 로 변경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13조(예산의 결산)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·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수입·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3조(예산의 결산) ----- -----재무상태표 ----- ----- -----.

- 여기서 대차대조표란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 차변(왼편)에는 모든 자산을 기재하고 대변(오른편)에는 모든 부채와 자본을 기재하는 재무제표 형식¹⁾으로, 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의 도입과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외부감사법”) 등 관련 법령의 개정²⁾에 따라 ‘대차대조표’라는 용어가 ‘재무상태표’로 변경됨.
- 참고로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회계처리의 기준으로,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·의무적용하고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외부감사법 제1조의2에 따르면 ‘재무제표’에 포함되는 서류 중 기존의 ‘대차대조표’를 ‘재무상태표’로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장회사는 ‘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 기준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, 부칙을 통해 이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²⁾.

1) 기획재정부 시사경제 용어사전 인용

2)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9408호, 2009. 2. 3., 일부개정)

제1조의2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무제표”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.

가. 재무상태표

나. ~ 다. (생략)

2. (생략)

제13조 (회계처리의 기준)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

- 또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³⁾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‘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’에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무제표 분류 및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규정하고 있음.

< 출자·출연기관별 재무제표 분류 및 명칭 >

기관구분		재무제표 분류 및 명칭				
		재무상태표	손익계산서 (운영성과표)	자본변동표 (순자산변동표)	현금흐름표	주식
출자기관		재무상태표	손익계산서	자본변동표	현금흐름표	주식
출연기관	일반	재무상태표	운영성과표	-	현금흐름표	주식 (순자산변동표)
	지방의료원	재무상태표	손익계산서	기본금 변동계산서	현금흐름표	주식
	테크노파크	재무상태표	운영성과표	순자산변동표	현금흐름표	주식
	지역신용 보증재단	재무상태표	손익계산서	기본재산계산서 (순자산변동표)	현금흐름표	주식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.

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.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

2.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

② (생략)

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3) 제27조(운영지침의 통보)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·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,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3.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

- 다만 상기의 외부감사법이 ‘대차대조표’를 ‘재무상태표’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⁴⁾이나 「상법」⁵⁾의 경우 여전히 ‘대차대조표’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, 외부감사법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되면서 재무상태표에 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병기함으로써 법률상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 있음⁶⁾.
-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고 상장회사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며, 이로 인해 동 조례의 상위법인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의 경우 여전히 ‘대차대조표’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.
- 따라서 현재 국제회계기준 상 재무상태표가 상용되고 있는 점을

4)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30조(예산과 결산)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5) 「상법」 제447조(재무제표의 작성)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1. 대차대조표
 2. ~ 3. (생략)
 ② (생략)
 제579조(재무제표의 작성)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1. 대차대조표
 2. ~ 3. (생략)
 ② ~ ③ (생략)

6)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1. (생략)
 2. “재무제표”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.
 가. 재무상태표(「상법」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)
 나. ~ 다. (생략)

감안할 때 동 조례상 ‘대차대조표’의 ‘재무상태표’로의 개정
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이 경우 상위법도 이에 맞게
개정되는 것이 법적 정합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서울시는 법률
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혜진	02-2180-8057